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5항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급수시설이 정수 처분된 자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2. 5.(수) ~ 12. 18.(화), 14일간
2.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압류예고 재산표시 : 부산광역시 명지동 3237-9(대지 1960.4㎡)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급수전 현황			체납현황		정수처분
고객번호	수용가	주 소	체납기간	금액(원)	
491692-100	서은희(윙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로 163 (구: 명지동 3237-9)	2016. 8월 ~ 2018. 10월	1,616,380	2017.8.11.

6. 납부안내

- 상기 급수전 수용가는 공고기간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법」 제68조 의거 요금 등의 강제징수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요금부서 ☎ 051-669-5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

